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 제1조(목적)
- 제1조의2(보조생식술의 범위)
- 제2조(임산부의 신고)
-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 제4조삭 제
- 제5조(임산부 · 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제6조삭 제
-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 절차 및 취소)
-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 제12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 제12조의2(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 · 운영의 위탁)
- 제12조의5(통계관리)
- 제12조의6(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 제13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 제15조의2(변경신고)
-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16조(건강기록부의 관리)
-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제18조삭 제
-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 제18조의3(폐업 · 휴업 및 재개의 신고)
-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 제19조의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8.]

제1조의2(보조생식술의 범위)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2.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이하 "체외수정 시술"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2조(임산부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09. 7. 8.]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2.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사항
3. 임신 중의 주의사항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④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⑤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新)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09. 7. 8.]

제4조 삭제 <1999. 6. 21.>

제5조(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12. 30., 2015. 1. 6.>

1.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2. 예방접종: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09. 7. 8.]

제6조 삭제 <1999. 6. 21.>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1. 6.>

[전문개정 2009. 7. 8.]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1. 6.>

[전문개정 2009. 7. 8.]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취소)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관리·지원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으로 둘 것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5명 이상 둘 것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 등의 현황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4.]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2.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명세서

3.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확인 의견서

④ 관할 보건소는 제3항제3호에 따른 현지확인 의견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현지확인 후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현지확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동시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중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 6. 23.>]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및 기관의 장

2. 기관의 소재지

3. 시설 및 전문인력(의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서를 고쳐 써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2. 난임시술의 실적
3. 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4.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난임시술의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3. 난임시술의 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목적 달성을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12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인 중 의료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6. 6. 23.]

제12조의2(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4.>

- ②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는 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등 주요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14.]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5로 이동 <2017. 6. 14.>]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2.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14.]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6으로 이동 <2017. 6. 14.>]

제12조의5(통계관리)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의료비 정보
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의 배아 관리에 관한 정보

[전문개정 2017. 6. 14.]

[제12조의3에서 이동 <2017. 6. 14.>]

제12조의6(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4.>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통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6. 6. 23.]

[제12조의4에서 이동 <2017. 6. 14.>]

제13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5. 1. 6.>

[전문개정 2009. 7. 8.]

[제8조에서 이동 <2016. 6. 23.>]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23.>

[본조신설 2006. 6. 8.]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015. 7. 29., 2016. 12. 30.>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 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
 - 5의2. 영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2015. 1. 6.>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 [전문개정 2009. 7. 8.]

제15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2015. 1. 6.>
 -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 [전문개정 2009. 7. 8.]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09. 7. 8.]

제16조(건강기록부의 관리)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신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09. 7. 8.]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산후조리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1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6. 6. 23., 2016. 12. 30.>

② 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안전 관리 등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④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 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1. 6.>

⑥ 산후조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전문개정 2009. 7. 8.]

제18조 삭제 <2015. 7. 29.>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기간 등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015. 12. 31.>

[전문개정 2009. 7. 8.]

제18조의3(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유아를 미리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09. 7. 8.]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①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이하 "요금체계등"이라 한다)을 접수창구·안내실 등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 요금체계등을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산후조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모자동실(母子同室)의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산후조리원에 평가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19조의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①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등 일반현황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3. 그 밖에 산후조리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산후조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8.]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본조신설 2013. 12. 31.]

부칙 <제800호, 1987. 4.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피임시술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시장·군수가 지정한 피임시술기관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③(피임시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 수태조절 교육을 받은 조산원 또는 간호원은 이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직할시·도지사·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 통합보건요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불임수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가족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불임수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호, 1999. 6. 2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02호, 2001. 10. 9.>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62호, 2006. 6. 8.>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⑩까지 생략

⑪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⑫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27호,2009. 7. 8.>

이 규칙은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 3. 19.>(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②까지 생략

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8호,2010. 9. 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10. 12. 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8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14. 8. 6.>(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5.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15. 7. 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15. 12. 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16. 6. 23.>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별표 3 제2호다목1)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 예방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일부터 2년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00호,2017.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18. 9. 14.>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 9.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5.7.29.>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임산부

-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영유아

- 가. 신생아: 수시
- 나. 영유아
 - 1)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 2)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3. 미숙아등

- 가.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 나.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 다.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6. 6. 2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1. 시설	가. 진료실 나. 독립적인 공간의 정액채취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2. 장비	가. 초음파기기 나. 현미경 다. 정액검사장비 라. 원심분리기 등 정자분리 장비	
3. 전문인력	가. 산부인과 전문의 1명 이상 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9. 27.>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 인력

- 1) 건강관리책임자: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둔다. 이 경우 2)의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 2) 간호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 3) 간호조무사 :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 4)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한다.

나. 그 밖의 인력

- 1) 임신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조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1회 30명 이상의 임신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 2) 산후조리원의 규모에 따라 임신부실 및 영유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다.

다.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특례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거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 1) 임신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신부와 영유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방문객을 위한 손 씻기 시설(싱크대 또는 손소독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5) 목욕탕은 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6)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임신부실에서 임신부가 영유아에게 엄마 젖을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위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8)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좌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9) 산후조리원의 시설은 산후조리업의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의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임신부실

임산부실의 면적(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 1) 임신부 1명을 수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
- 2) 임신부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임신부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

다. 영유아실

- 1)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

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한다)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2) 영유아실 입구에는 손 씻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세면대(싱크대)는 영유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하 "사전관찰실"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관찰실은 투명한 벽체·칸막이 등(커튼은 제외한다)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라. 급식시설

- 1)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보관·식기 세척·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2)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세탁실

- 1) 산후조리원에는 세탁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따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세탁실은 임산부실, 영유아실 및 식당 등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7.8>

(임신부 · 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 임신부 (영유아)성명		②생년월일		③배우자 (신고자)성명	
④주소					
⑤임신 · 분만 사항	. . . (임신 분만)		⑥그 밖의 참고사항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6.>

(임산부·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

보내는 사람		요금별납
-		
기관장		
기관명		
소재지		받는 사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접는선

(임산부·영유아) 신고사항 보고서					
①임산부 (영유아) 성명		②생년월일		③배우자 (신고자) 성명	
④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전화:)				
⑤신고내용	임신		개월	주	⑥신고일자
	영유아		년	개월	

..... 접는 선

(접는 뒤쪽)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7.8>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①수첩 발급번호	②발급 연월일	③임산부 영유아성명	④생년월일	⑤ 세대주 성명	⑥주 소	⑦ 임신주수	진단

268mm × 193mm[인:]

[서식 4] 삭제 <1999.6.21>

[서식 5] 삭제 <1999.6.21>

[서식 6] 삭제 <1999.6.21>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6>

의 료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임신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모자보건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신부의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 상 자	구 분	☐ 임신부 사망 ☐ 사산 ☐ 신생아 사망			
	성 명(사산은 모의성명)		성 별 ☐ 남 ☐ 여 ☐ 불확실		
	생년월일(사산은 모의 생년월일)				
	주 소				
	사망·사산일		사망·사산장소 ☐ 의료기관 ☐ 병원이송 중 사망 ☐ 주택 ☐ 기타		
임신주수 ·체중 및 사망·사산 원인	임산부 사망	사산		신생아 사망	
	임신()주 또는 분만 후 ()일, 주	모체측 원인	태아측 원인	모체측 원인	신생아측 원인
		임신()주 사산 사산시()g	임신()주 사산 사산시()g	임신()주 출산 출생 시()g	임신()주 출산 출생 시()g
	진단1 : _____ (질병코드 : _____) 진단2 : _____ (질병코드 : _____) * 복합사인의 경우 추가진단명 (진단3 : _____ (질병코드 : _____) 등 기재 가능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재결용품))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6>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임신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임신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 상 자							임신주수·체중 및 사망·사산원인				
구분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주소	사망 사산일	사망 사산장소	임신주수 및 체중	사망·사산원인			
								임산부·모체		태아·신생아	
								진단1	진단2 ~ 진단3	진단1	진단2 ~ 진단3
1.임산부 2.신생아 3.사산	*사산은 모의 성명	남, 여 불확실	*사산은 모의 생년 월일		년 월 일	1.의료기관 2.병원미송 중 사망 3.주택 4.기타	1. 임신_주 또는 분만 후_일, 주 2. 임신_주 출산 출생시 _g 3. 임신_주 사산 사산시 _g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결용품)]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5.1.6.>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성명(출생아 모)		생년월일(출생아 모)	
주 소		전화번호	
분만기관명		분만일	
임신관련 정보	보조생식술 여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다태아 여부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생 시 아기 체중 g	임신기간 임신 ()주 ()일에 분만(최종월경일)	
분만 시 발견된 선천성이상아 소견	진단1: _____(질병코드: _____) 진단2: _____(질병코드: _____) *복합사인의 경우 추가진단명[(진단3: _____ (질병코드: _____)) 등 기재 가능		그 밖의 참고사항

「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장 (서명 또는 인)

(요양기관기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210mm ×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14.8.6>

(앞 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드				
임산부(영유아) 성명		생년월일		배우자(보호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사회보장 여부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공적부조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산전진찰 회	진찰장소 [] 병원급 이상 [] 의원 [] 조산원 [] 보건소 [] 기타()		특기사항(임신 중독증)	
분만기관명 (전화번호:)				
임신관련 정보		보조생식술 여부 [] 체외수정 [] 인공수정		다태아 여부 []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이상
임신회수		회 임신력	분만경험 [] 미숙아 [] 저체중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 유산(자연, 인공) [] 자궁 외 임신 [] 기타	
분만 시 아기 상태			체중 g	임신기간 ()주 ()일
선천성이상 소견				
「모자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카드임. 년 월 일 등록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 쪽)

등록관리 기록							
일자 (월일)	개월 (월령)	신장 (cm)	체중 (g)	건강상태 및 건 강진단 결과	가정방문 및 관리내용	보육기·신생아 집중치료실 입 원 등	기관명
예방접종 기록							
예방접종별 접종일	결핵 (BCG)	디프테리아·파 상풍·백일해 혼합백신 (DTaP)	소아마비 (Polio)	B형 간염	홍역·볼거리 ·풍진 혼합백 신 (MMR)	기타	접종자 성명
월 일(주)							
주소지 변경기록							
주소 이동 기록	제1이동						
	제2이동						
	제3이동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14.8.6>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 보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출생아 모		주소 (전화)	분만 기관명 (오양기관 기호)	분만 일	보조 생식 술여 부		다태아 여부			출생 시 체중 (g)	임신 기간 (주)	분만 시 발견된 선천성이상아 소견		기타 참고 사항
성명	생년 월일				체 외	인 공	단 태 아	쌍 태 아	삼 태 이 상			진단	진단2 (진단)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6서식] <신설 2018. 9. 14.>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개월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종류	요양기관 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개설 전문과목		허가 병상 수
중앙모자 의료센터	센터장 성명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자우편 주소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 등의 현황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6서식] <신설 2018. 9. 14.>

제 호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명 칭: 중앙모자의료센터
5. 센 터 장:

위 기관을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 (백상지 150g/㎡)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6. 6. 23.>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종류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신고(허가)번호	
기관의 장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면허번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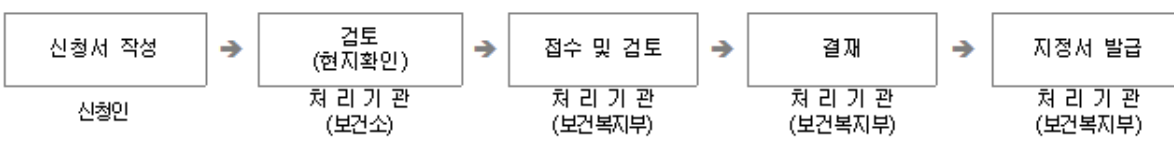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명세서 3.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확인 의견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의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6. 6. 23.>

(앞쪽)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현지확인 의견서

의료기관	명칭	기관의 장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1. 시설 현황

1) 진료실	☐ 있음	☐ 없음	일반진료실
2) 독립적인 공간의 정액채취실	☐ 있음	☐ 없음	정액채취실의 경우 다른 용도의 방과 같이 사용하지 않아야 함

2. 장비 현황

1) 초음파기기	☐ 있음	☐ 없음	작동여부 확인
2) 현미경	☐ 있음	☐ 없음	작동여부 확인
3) 정액검사장비(세포계수기)	☐ 있음	☐ 없음	작동여부 확인
4) 정자분리장비(원심분리기)	☐ 있음	☐ 없음	작동여부 확인

3. 전문인력 현황

1) 의사인력	☐ 산부인과 전문의(명)
	☐ 전문의(명)
	☐ 일반의사(명)
2) 간호인력	☐ 간호사(명)
	☐ 간호조무사(명)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현지확인 의견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건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뒤쪽)

구 분		현 황					
시설현황		☐ 진료실 ☐ 정액채취실 ☐ 기타 ()					
장비현황		☐ 초음파기기 ☐ 현미경 ☐ 정액검사장비 () ☐ 정자분리장비 ()					
전문 인력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또는 자격번호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번호	채용일자	전화번호 (E-mail)
	의 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기 타						
정액검 사방법							
정 자처 리방법							
특기 사항							
담당자 확인		관할 보건소		직급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신설 2016. 6. 23.>

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종류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신고(허가)번호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	지정번호	지정일자 년 월 일	
기관의 장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면허번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의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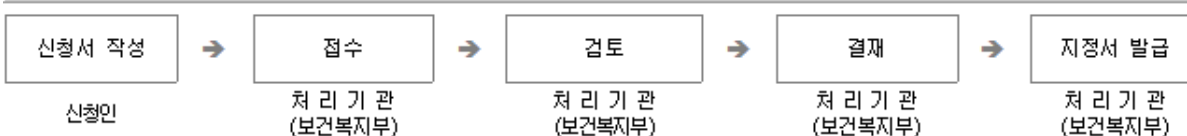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기관의장)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신설 2016. 6. 23.>

(앞쪽)

제 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체외수정 시술

○ 기관의 명칭 :

○ 기관의 소재지 :

○ 기관의 장 성명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변경사항 등			
연 월 일	내 용	확인자	서명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5서식] <신설 2016. 6. 23.>

난임시술 의료기관 변경신고서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기관	명칭	지정번호		
	기관의 장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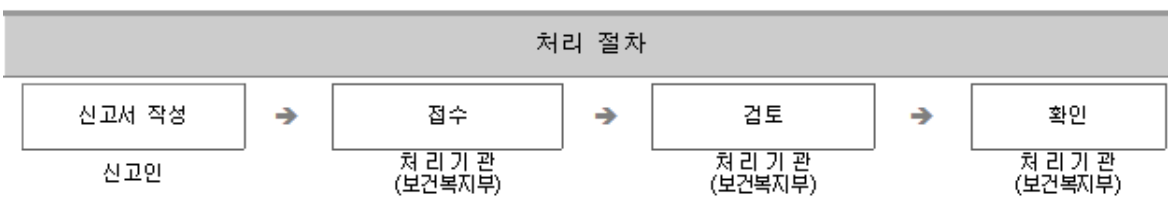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 고 인(기 관 의 장)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9. 27.>

산후조리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개원연월일				정원(임산부/영유아) 명 / 명		
시설 설비 내역	임산부실				영유아실		
	m ²				m ²		
	모유수유실				급식시설		
	m ²				m ²		
	세탁실				목욕실		
	m ²				m ²		
화장실				사무실			
m ²				m ²			
그 밖의 시설							
m ²							
설비내역							
직원	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미화원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모자보건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 × 297mm[백상지 80 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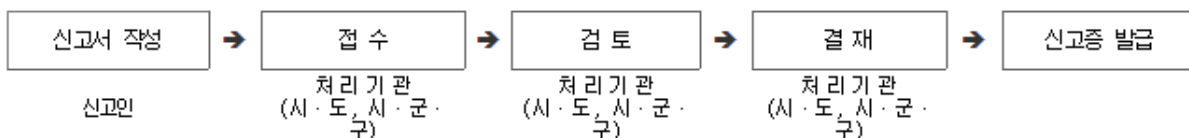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6.>

(앞쪽)

제 호

산후조리업 신고증

○ 대 표 자: (생년월일:)

○ 명 칭:

○ 소 재 지:

○ 조 건: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illegible]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8.6>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

업소 정보	명칭		
	신고일	신고번호	
	교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물 내역	영업장 면적 ㎡	건물층수 층	사용층수 지상 층/지하 층
	건물 소유 구분 [] 자가 [] 임대, 대지면적 : 건물면적 :		
〈신고·변경신고·행정처분 내역〉			
년월일	내 용		

210mm×297mm[백상지 80g/㎡ (재결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6.>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명 칭			
	영 업 소재지	(전화)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6.>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산후조리원의 명칭 변경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변경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				
산후조리원 면적의 증감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2.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일반/집합)]		없음
본인은 이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6.>

(앞쪽)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산후조리원	명 칭	변 경 전	변 경 후	
	소재지	(전화)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모자보건법」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모자보건법」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 발 일 자	「모자보건법」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 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7.8>

임산부 건강기록부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 만 일										산후조리원 입원일									
분 만 형 태																			
출혈 배인																			
출 혈																			
체 온																			
혈 압																			
특이사항																			

297mm ×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8.6>

영유아 건강기록부

이름(산모)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분 만 일				출생 시 몸무게						입 원 일					
재원일(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총수유량 (cc)	체 중(g)	아래 해당 항목의 숫자를 보고 영유아의 당일 총수유량과 체중을 각각 표기													
760	7600														
720	7200														
680	6800														
640	6400														
560	5600														
520	5200														
480	4800														
440	4400														
360	3600														
320	3200														
280	2800														
240	2400														
체 중(gm)															
모유수유 횟수															
조제분유 수유량															
1일 대변 횟수															
1일 소변 횟수															
1일 구토 횟수															
체 온															
그 밖의 사항															
※ 별지를 사용하여 추가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06.6.8>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번호	문서번호 (발송일자)	산후조리원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청문일자	처분기준	처리결과

297mm×210mm(보)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